

2000. 3. 16

도시계획재정비심사보고서

(충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조정안의견제시의건)

산업건설위원회

충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조정안심사보고

1. 심 사 경 과

- 제안일자 : 2000. 3. 6
- 회부일자 : 2000. 3. 13
- 상정일자 : 2000. 3. 15
- 의결일자 : 2000. 3. 15
- 제안설명 : 지역개발과장

2. 제 안 설 명 요 지

○ 제안이유

- 도시기본계획상의 내용을 수용하여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함
은 물론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한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도시
계획 재정비 내용으로

- 도시계획구역을 우회하는 달천대교 - 단월대교간의 도시계획도로
와 연계되는 광장 및 자연취락지구를 조정하여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해소는 물론 현실과 미래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계획
으로 성안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자연취락지구 면적조정

- 위 치 : 충주시 달천동 843-2 일원
- 면 적 : $37,880\text{m}^2 \Rightarrow 46,010\text{m}^2$

- 도로변경 조정

- 위 치 : 단월동 1-2 대 ⇒ 도로
- 면 적 : 35m ⇒ 15m (경관도로 : 2,405m)

- 교통광장 조정

- 위 치 : 달천동 765-2
- 면 적 : 15,500m² ⇒ 17,830m² (증 2,330m²)

3.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99통합 충주도시계획의 구역확장과 용도지역 및 지구
결정, 시설결정등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한점을 수정보완
하는 내용에 대해 충주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 승인요청중에

달천동 송림마을 주민들로부터 도시계획도로 폐지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와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으로 인한
민원해소 및 현실과 미래가 조화되는 경관도로 조성과 도
로와 접해 있는 자연취락지구 및 교통광장등을 재조정
하기 위해 2000. 2. 23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발전의 기반을 구축함과

주민생활의 입지여건과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적
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한 내용
으로 충주 도시계획 재정비결정 변경조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질의: 자연취락지구의 정의와 주거지역과의 차이는?

<답변> 농촌지역에 집단거주하는 지역의 건폐율을 완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하여 건폐율은 40%임

▶ 질의: 주택밀집 지역이면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답변> 주거지역으로 변경시는 각종 제반 시설과 주위여건이 고려되며 이 지역 주변은 농경지가 많은 지역임

▶ 질의: 자연취락지구는 시장 권한 인가요?

<답변> 시에서 건의하여 도에서 결정

▶ 질의: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는지?

<답변> 지난번에 도에 건의하여 심의중이며 면적등을 조정하여 변경조정안을 제출할 것임

▶ 질의: 전구간 도로폭을 같게 일괄조정하는 것과 자전차 도로도 병행하는 것이 어떻지?

<답변> 자전차도로도 계획하고 있으며 시행단계에 들어가서 일괄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것임

▶ 질의: 광장폐지와 철길부분도로 계획은?

<답변> 35m 도로가 연결시 광장이 필요하며 육교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 건교부와 협의하여 우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임

5. 심사결과

○ 충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조정안: 의견서 채택

6. 기타

○ 충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조정안 의견서: 별첨

의 견 서

□건 명 : 충주도시계획 재정비변경결정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견

□의안번호 : 164 호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의 견

- 충주도시계획 재정비변경결정 조정안은 도시계획 구역을 우회하는 달천대교 - 단월교간의 도시계획 도로와 연계되는 광장 및 자연취락지구를 조정하고 장래 교통 체계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 일부의 폭을 조정 하는 것으로
- 이는 기존 도시계획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해소는 물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점을 수정보완하는 계획이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조정안대로 변경결정 하는 것을 찬성함

'2000. 3. 15

산업건설위원장